

제408회 임시회
' 23. 4. 20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3년 4월 11일
- 회부일자: 2023년 4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치아교정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* 본인의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강화
 - 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- 他 의료지원제도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아교정 지원을 통해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, 치주질환 등 사전예방 및 폭넓은 의료선택 기회 제공

4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 권 자: NH농협은행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: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
 - (현행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조례 상 지원대상
- 융자금액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- 융자조건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(이하 “본 동의안”이라 함)은 치아교정사업 지원에 한정하여 사업대상자를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취약계층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녀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.
 - ※ 본 동의안에서 용자금액(25억원), 용자조건(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)의 변경은 없음.
- 본 동의안의 제출 사유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제3항1)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확대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바,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대상 시술(수술) 범위를 치아교정²⁾ 영역까지 확대하고, 사업대상도 의료취약계층 본인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영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치아교정: 치열이 비뚤어지거나 돌출입, 부정교합인 치아를 교정장치를 이용해 고르게 만들어주는 시술

<의료비 후불제 사업 대상 시술(수술) 확대>

현 행	확 대(안)
○ 대상수술 - 임플란트 식립, 슬관절·고관절 인공관절, 척추 및 심·뇌혈관 수술(시술)	○ 대상수술 - 임플란트, 슬·고관절 인공관절, 척추, 심·뇌혈관, 치아교정 수술(시술)

<의료비 후불제 사업 대상자 확대>

현 행	확 대(안) * 중복제거
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 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 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 ④ 국가유공자(6,501명) ⑤ 장애인(47,012명)	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 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 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 ④ 국가유공자(6,501명) ⑤ 장애인(47,012명) ※ 치아교정의 경우, 의료취약계층(②,③,④,⑤)의 자녀까지 지원

○ 치아교정은 단지 심미적 이유가 아니라,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, 치주질환 등의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수술(시술)이며, 현재는 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가 진행할 수 있는 치료(물론 초등6학년 부터 중학교 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)임을 감안할 때,

- 보건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他 의료지원제도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아 교정 비용을 융자해 줌으로 폭넓은 의료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은 2022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이후, 올해 1월 19일 사업대상자 확대³⁾를 위한 첫 번째 변경

3) 1.19. 변경동의안 내용: 사업대상자 확대 : 112,358명 → 440,549명(增 328,191명)

현 행	변 경 안 * 중복인원 제거
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31,915명) ②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(10,311명) ③ 만 65세 이상 장애인(50,195명) ④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(19,937명)	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 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 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 ④ 장애인(47,012명) ⑤ 국가유공자(6,501명)

동의안이 제출돼 원안 가결되었었고, 변경 동의안이 가결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대상수술 범위 및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본 동의안이 두번째로 제출된 것임.

- 물론, 본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적 성격의 사업인 만큼 실제 사업 수요자의 규모 추계가 어렵고,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 제7조⁴⁾에 지원대상 질병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잦은 변경 동의안 제출은 기획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함.
- 이에, 사업 계획 전반(특히, 수술(시술) 대상 사업 및 대상자 범위 관련)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본 동의안에서 사업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녀까지로 확대한 것(치아교정의 경우로 한정)은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 제5조제1항제5호⁵⁾에 따른 조치로 판단됨.

- 그러나, 제5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수시로 또는 과하게 확대할 경우, 도지사의 재량범위 과다 및 남용 문제 발생으로 법정주의(法庭主義) 원칙을 희석시킬 수 있음.
- 따라서, 제5조제1항제5호에 근거한 대상자 범위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, 향후 추가 확대 상황이 발생할 시, 대상 범위에 관한 사전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.

4) 제7조(참여 의료기관의 지정) ① 도지사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 용자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(이하 “참여 의료기관”으로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과 지원대상 질병의 범위, 사업참여 기간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5) 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1.>

1. 65세 이상인 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5.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용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 수술(시술) 및 사업대상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내용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, 잦은 변경 동의안 제출을 지양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, 사업 계획 전반(특히 수술(시술) 대상 사업 및 대상자 범위 관련)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참고

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추진상황 ('23. 4. 17. 기준)

□ 신청현황 (총괄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분	사업신청		적격여부		대출실행		비고
	신청인원	신청금액	여	부	대출인원	대출금액	
누 계	176	454,278	175	1	144	361,900	

※ 누적 상담건수 : 1,462건

□ 신청자 세부현황

(단위 : 명)

① 대상별	계	65세 이상	기초수급자	차상위계층	국가유공자	장애인
		176	79	78	2	7

② 질환별	계	임플란트	슬관절	고관절	척주	심혈관	뇌혈관
		176	143	7	3	15	5

③ 시군별 (거주지 기준)	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		176	107	23	12	1	11	2	2	4	3	10
종합·일반병원	42	33	1	2	-	2	-	1	-	1	2	-
치 과 병 원	134	74	22	10	1	9	2	1	4	2	8	1